

CONTACT



변호사 정환

T: 02.772.4940
E: hwan.jeong@leeko.com



변호사 선정호

T: 02.772.4676
E: jeongho.sun@leeko.com



변호사 최승호

T: 02.772.4729
E: seungho.choi@leeko.com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시사점

●●● 기술유통 손해배상액 상한 상향 등 규제 강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4. 2.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i) 기술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상향하고, (ii) 기술유통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산정기준 및 증명 부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등 기술유통 행위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유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액 한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 (개정법 제35조)

-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기술유통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제한되어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음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나2032402 판결 등)
- 개정법은 기술유통 행위 억제 및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 현실화를 위하여 **기술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상향 조정함**
 - * 다만, 기술유통 행위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었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보복조치의금지 위반 행위의 경우 현행 최대 3배 배상 한도 유지
- 개정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

2. 기술유통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손해액 산정기준 등 도입 (개정법 제35조의6 신설)

- 그동안 중소기업이 기술유통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기준이 없어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음
- 개정법은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허법 등 유사 입법례의 손해액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하도급 분야에 적용 가능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마련함

- 개정법은 시행 이후 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

손해액 산정기준	관련 내용
상품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상 업무 위탁범위에 용역도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목적물의 범위를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까지 포함
기본 산정기준 (제35조의6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기업의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으로,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기업이 생산규모 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뿐 아니라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까지 포함
추정 기준 (제35조의6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 유용이 원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3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
대가 수준 (제35조의6 제3항,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 사용에 대한 대가를 '통상 대가'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합리적 대가(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규정
손해액 증명 부담 완화 (제35조의6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3.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하도급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기초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러한 추세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법은 다른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보다 기술유용 유형을 특정하여 기존 3배보다도 더욱 높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관련 규정들도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정비하였습니다.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유사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핵심기술을 보유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위탁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술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매뉴얼과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사전에 구축하여 행위를 예방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계약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거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회사의 잠재적 리스크를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사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 방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하도급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도급 관련 이슈에 대해 최상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그룹의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